

조특법 제122조의2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¹⁾

1. 규정의 취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수입금액이 차동적으로 검증되는 장치를 갖춘 소규모²⁾ 성실신고사업자가 일정요건³⁾을 충족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률 이상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첫해 100%, 다음해 50%)하거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토록 하였다.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가 수입금액 노출장치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외형증가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1)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신설된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시 이해를 돕고자 검토한 것임

2)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의 구분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국세청 고시(제2003호-1)인 2003.7.17.를 적용

3) 아래의 '3. 과세특례 적용요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음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자는 직전과세연도의
첨부대상 사업자 기준금

이들에 대해 업종별로 국
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역
말한다(조특법§122의2①)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
도가 없으므로 당해 과

<참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
(국세청고시 제2003-

- 업
-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가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금융 및 보험업
-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

4)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의 구분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으로 국세청 고시(제2003호-1)호, 2003.4.7)를 적용

고하기 바람

* 업종을 경영하거나 사업장

3. 과세특례 적용요건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종별로 정한 일정기준
기준, 소득금액 증가율
및 지출증빙비율 기준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
이를 나눠 살펴보기로 함

(1) 계속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증가율

: 수입금액이 직전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다만, 이 경우 사업장의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관리시스템

③ 「영화진흥법」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위원회가 운영하는

④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계좌⁵⁾

나.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

: 신고소득금액이 직전과세연도 이상일 것



[산식]

$$\frac{\text{당해 과세연도 신용카드 소득금액} - \text{직전과세연도 신용카드 소득금액}}{\text{직전과세연도 신용카드 소득금액}}$$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직전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조특법§122의2①3호).

§ (당해 과세연도 신용카드 소득금액 - 직전과세연도 신용카드 소득금액) / 직전과세연도 신용카드 소득금액

<참고>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25>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 48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79의2>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3. 숙박업
4. 목욕 이발 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이차권을 발행하는 사업

다. 수입금액 신고내용 기준

: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합계액 증가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1)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당해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및 전자적결제수단 등(신용카드 등)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의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하여야 한다

7.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 영 제74조제2항제7호의 사업종류(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

5) 영화진흥법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2006-6호, 2006.3.17) 및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국세청 고시(2006-6호, 2006.3.17) 내용 중 [별표 2] 참조)

§

<동법 시행령 79의2>

- 8.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작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9.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동법 시행규칙 25의2>

-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 2.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
-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5. 부동산중개업
-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7. 가사서비스업
-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이외의 사업자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과세연도의 교부분보다 증가하여야 한다(조특법 §122의2①4호).

§

[세금계산서미교부 등 사유]

<「부가가치세법」 22①호 >

-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거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 3.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5.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 6.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 7.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

§

<「소득세법」 81⑦>

- 1.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거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 2.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76⑨>

라. 지출증빙비율 기준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한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⁷⁾에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를 제외한 필요경비 중 아래와 같은 지출증빙서류(정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조특법§122의2①5호).

① 계산서

② 세금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

[산식]

정규증빙금액

(필요경비 총액 - 매입경비, 임차료, 급여등)

> 국세청장 고시율⁸⁾

7) 다만,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8⑥) 부당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증빙비율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8) 간편장부대상자의 지출증빙비율로 80%로 고시함(국세청 고시 2006-6호, 2006.3.17)

기준금액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2) 신규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신고내용

당해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조특법§122의2①4호).

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② 「부가가치세법」 제3

또는 동법 시행령 제

수단에 의하여 발행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

④ 「영화진흥법」 제7

운영하는 영화관입장

⑤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계좌⁹⁾

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융기관 및 채신관서를 통하여 지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2006-6호, 2006.3.17)의 별표 2(국세청장 지정)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0) 국세청 고시(2006-6호, 2006.3.17) 내용 중 [별표 2] 참조

[사식]

나. 지출증빙 비율 기준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한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¹¹⁾에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외의 필요경비 중 아래와 같은 지출증빙서류(정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조특법§122의2①5호).

- ① 계산서
- ② 세금계산서
-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

[산식]

정규증빙금액

1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증빙금액으로 확인되는 필요경비 유형이 없고 또한, 매개체 통과의 연결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필요경비 총액-매입경비, 임차료, 급여등) > 국세청장 고시율¹²⁾

12) 간편장부대상자의 지출증빙비율 기준을 80%로 고시함(국세청 고시 2006-6호, 2006.3.17)

4. 과세 특례 내용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과세특례¹³⁾를 적용한다.

(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때, 소득금액에 입금액에 업종별 정해진 과세표준액 이하인 소득금액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13) 과세특례 적용시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와 세액공제의 특례를 각각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과세특례는 소득별·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세액공제요건검토표와 세액공제계산서는 소득별·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함(별지 제74호의3서식 부속 작성방법 참조)

14)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는 수입금액·소득금액 증가에 따른 세제혜택으로서 과세특례 적용요건 중 신고소득금액이 작던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조특법§122의2①3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례소득금액이 작던 과세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가능함

15)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1-단순경비율)

$$[\text{산식}] \quad \times \quad \times$$

특례 소득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합계액 × 소득률(1-단순경비율) × 국세청장 고시율(경감율)¹⁶⁾

$$[\text{산식}]$$

경감대상 수입금액 = 당해 × 국

(2) 세액공제의 특례

1)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자는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한다.

세액공제금액을 당해 납부세액에서 공제¹⁷⁾

②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의 경우 경감 대상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한 금액으로 한다.

[산식]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산식]

경감대상 수입금액 = 당해

(3) 기장세액공제 특례

2) 경감대상수입금액의 계산

16) 소득세법 제 66조 제 1항 제 6호, 국세청 고시(2006-6호, 2006.3.17)

17)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18) 국세청 고시(2006-6호, 2006.3.17) 내용 중 [별표 1] 계속 사업자의 수입금액 선정기준을 참조

19) 국세청 고시(2006-6호, 2006.3.17) 내용 중 [별표 1]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 선정기준을 참조

① 계속사업자

경감대상자가 비치 산하고 신고납부하면서 에 20%를 적용한다(소득

성실신고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세액공제의 특례, 기장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다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이 가능하다(조특법§122의2⑤).

2) 중복공제 배제

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을 받은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30의2)의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5. 사후관리

(1) 세액공제의 특례 배제

(2) 경감 또는 공제 받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 경감받거나 공제받은 세

- ①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 ②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이 경정된 손금의 10

<참고1> 국세청 고시(2006-6호, 2006.3.17)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특례 관련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등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75호의3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3 서식 및 부표] 등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7일

국 세 청 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 (1-단순경비율)의 60%("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적용률"이라 한다)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사업자의 경감대상⁷ 수입금액 산정을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률(이하 "계속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당해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율"이라 한다)은 [별표2]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필요경비율(이하 "율"이라 한다)은 80%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에 위임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의2의 규정의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하는 최초 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 제출하는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별표 1] 계속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및 신규 사업자의

업종별	경감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업종의 수입금액 적용률(%)
농·수렵·임·어업	122	5.0
광업	104	5.0
제조업	108	5.0
전기가스수도업	110	5.0
도매업	108	5.0
소매업	104	5.5
부동산매매업	103	5.0
건설업	103	5.0
음식업	107	5.5
숙박업	106	5.5
운수창고통신업	117	5.0
부동산임대업	112	5.0
교육서비스업	108	5.0
보건업	110	5.5
인적용역자	106	5.0
기타	103	5.0

신 고 인			
			①상 호 (법인명)
			③성 명 (대표자)
			⑤사업장 소재지
			⑦구 분

수입금

⑧개 설은 행 1 체신관서만

구분	계속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율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비율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인 경우	음식점업	8.0
	숙박업	6.0
	소매업	9.0
	기타서비스업	11.0
	기타업종	9.0

[별표 2]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율(%) 및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비율(%)

계좌신고
 계좌변경
 계좌신고
 계좌변경
 계좌신고
 계좌변경
 계좌신고
 계좌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

첨 부 : 통장 사본.(전자신고시

<참고 2> 과세특례 적용대상여부 사례

[사례 1]				
귀속	2004	2005	2006	2007
수입금액	100	150	120	200
신고연도	<경감률>			
2006				100

2007 ×
 2008 ×
 2009 ×

* 업종기준,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은 충족
 * 세액공제특례 적용

■ 2005연도 수입금액(150)이 2004연도 수입금액(100) 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2006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당해연도 경감률(100%)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연도 경감률(50%)을 적용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2007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2006연도 수입금액(120)이 직전과세연도(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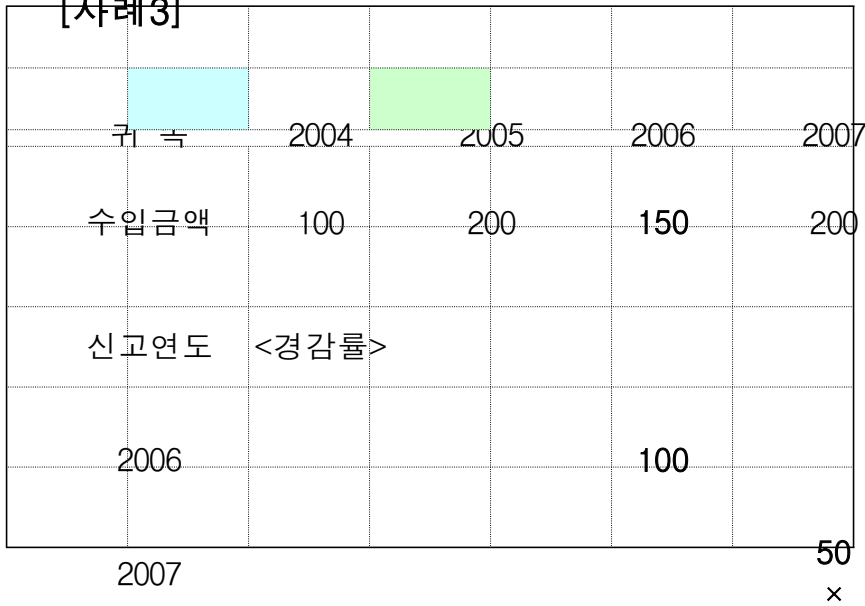
[사례 2]				
귀속	2004	2005	2006	2007
수입금액	100	130	400	300
신고연도	<경감률>			
2006				100

×

* 업종기준,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은 충족
 * 세액공제특례 적용

■ 2005연도 수입금액(130)이 2004연도 수입금액(100)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2006연도 신고시 당해연도 경감률(100%) 적용가능하다. 그리고 다음연도 경감률(50%)을 적용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2007연도 종합소득과세연도(2004년)의 수입금액(120)이 직전과세연도(2004년)의 수입금액(100)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2008연도 신고시 당해연도 경감률(100%) 적용가능하다.

[사례3]



2007

2008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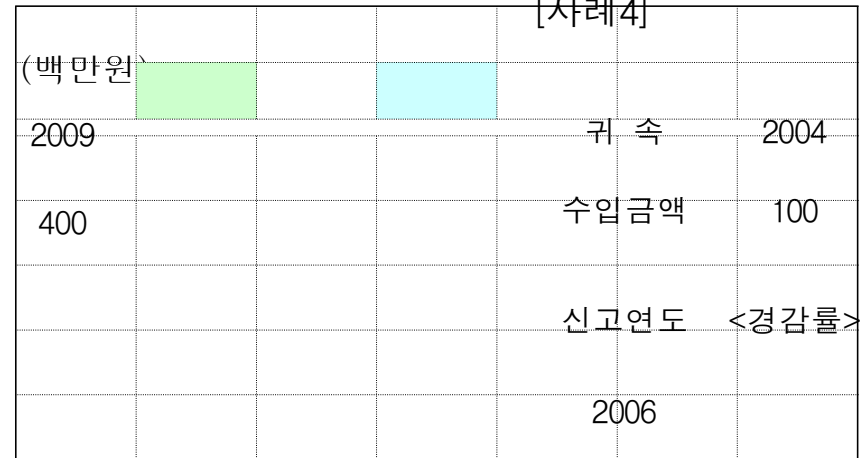
* 업종기준,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은 충족

* 세액공제특례 적용

■ 2007연도 수입금액(200)이 2006연도 수입금액(150) 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였으므로 2008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당해연도 경감률(100%) 적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연도에 경감률(5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08연도 수입금액(150)이 직전과세연도(2006년)의 수입금액(150)보다 100분의 30을 초과

[사례4]



2008

150

×
100

×

2007

2008

2009

* 업종기준,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은 충족

* 세액공제특례 적용

■ 2006연도 수입금액(150)이 2005연도 수입금액(200)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7연도 수입금액(200)이 2006연도 수입금액(150)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적용

<참고 3> 수입금액증가사업자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비교

<참고 4> 성실신고사업자

조 문	수입금액의 증가 세액공제 (조특법 §122)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 (조특법 §122의2)	과세 특례	<input type="checkbox"/> 소매업자 A의 종합			
취 지	자동적으로 양성화되는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자동검증장치를 갖춘 사업자로써 성실사업요건을 지원	갖춘 소규모 사업자				
대 상	개인사업자	소규모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범 위	1년 이상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 계속사업자					과세연도
	① 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 POS · 영화관입장권통합 전산망 · 전자상거래 사업자	① 소규모사업자요건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자 (도매 : 6억, 제조 : 3억, 서비스업 : 1.5억원)					2004년 (직전 과세연도)
	② 수입금액 요건: 아래 세액공제 방법 중 '㉠'에만 적용	②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요건 · 직전연도대비 130% 초과(수입) · 직전연도대비 100% 초과(소득금액)					2005년 (당해 과세연도)
대 상	· 직전연도 대비 100% 초과						2004년 (직전 과세연도)
요 건	· 1년이상 계속사업자	③ 수입금액 자동검증장치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POS, 영화관 통합전산망 설치 · 국세청에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신고등					2005년 (당해 과세연도)
지 원		④ 성실사업요건 · 성실기장 · 적격증빙영수증 일정율 수취					
세 목	소득세	소득 · 법인 · 부가가치세					

-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업종
- 단순경비율 : 22%, 소득공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30%
- 2006년도 수입금액 및 산출세액(국세청고시 2006-6호, 2006.3.17)됨
- 소득공제 : 460만원(기본공제)

세액공제 : [㉠, ㉡] 중 선택

㉠ 소득 · 법인세 세액공제
· 증가된 수입금액 상당 산출세액(국세청고시 2006-6호, 2006.3.17)됨
(당해 100%, 다음연도 50%)
· 소득금액계산특례 중 선택 적용(개인)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 甲의 경우

<소득세> : 과세특례 : 다

② 세액계산의 특례 : '가' 와 '나' 적용

가. 세액공제액

- 경감대상 수입금액 = 80백만원 = 300백만원 - (200백만원×1.1)
= 당해 수입금액 - (직전연도수입금액×신장율)

▪ 세액공제액(2005년)

$$\text{당해산출세액} \times \frac{\text{경감대상수입금액}}{\text{당해연도수입금액}} \times \text{경감율} \quad (\text{첫해 } 100\%, \text{다음해 } 50\%)$$

$$6.5\text{백만원} \times \frac{80\text{백만원}}{300\text{백만원}} \times 100\% = 1.7\text{백만원}$$

→ 1.7백만원을 2006년도 신고시(2005년 귀속) 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2006년)

$$6.5\text{백만원} \times \frac{80\text{백만원}}{300\text{백만원}} \times 50\% = 0.9\text{백만원}$$

→ 0.9백만원을 2007년도 신고시(2006년 귀속) 소득세에서 공제

다. 기장세액공제액				

-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 20%
= 6.5백만원× 20%= 100만원(한도적용)
- 세액경감액 = 0.3백만원 = 100만원 - (6.5백만원×10%)

21) 60%로 고시(국세청 고시 2006-6호, 2006.3.17)됨

(2)乙의 경우

<소득세> : 과세특례 : 다

①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금액 = 37백만원 = [수입금액]
- 산출세액 = 4.6백만원
- 세액경감액 : 1.9백만원

② 세액계산의 특례 : '가'

가. 세액공제액

- 경감대상 수입금액 =
- 세액공제액(2005년)

$$\text{당해산출세액} \times \frac{\text{경감대상수입금액}}{\text{당해연도수입금액}}$$

$$6.5\text{백만원} \times \frac{200\text{백만원}}{300\text{백만원}} = 4.3\text{백만원}$$

→ 1.4백만원을 2006년

- 세액공제액(2006년)

나. 기장세액공제액

○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 × 20%
 = 6.5백만원 × 20% = 100만원(한도적용)

○ 세액경감액 = 0.3백만원 = 100만원 - (6.5백만원 × 10%)

<input type="checkbox"/>	세액경감효과 비교			

구 분	2005귀속	2006귀속	소 계	
①소득금액계산 특례	1.9	-	1.9	
②세액계산 특례	수입증가분	1.4	0.7	2.1
	기장세액공제	0.3	0.3	0.6

■ 2006년 종합소득세(2005년 귀속)과세표준신고시 다음연도의
 진이 예상되어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이 2004년도 귀속 수입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
 의 특례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 5> 성실신고사업자

		[별지 제74호의3서식] 2006.4.10개정	
		성실신고사업자	
		①상호(법인명)	
신		③성 명	
(백만원)	청	⑤주 소	
합 계	인	⑥사업장 소재지	
1.9		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2.8		⑧해당 연도 수입금액	
		⑨소득 (1-단순계	
업황부		2. 세액공제의 특례 적용시	
		가. 수입금액 신고현황	
		2004년	
		나. 경감대상 수입금액 계산	
		⑩해당 연도 수입금액	⑪직전 연도 수입금액
		⑫국세청 (업종부 신	

다. 세액공제액 계산

⑩해당 연도 수입금액(⑫) ⑪경감대상 수입금액 ⑫공제비 (⑩/⑪)

작성 방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1.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또는 2. 세액공제의 특례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9항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2. 세액공제의 특례만 적용됩니다.
3. ⑧해당연도 수입금액란은 해당 사업장의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⑫해당 연도 수입금액 · ⑬직전 연도 수입금액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⑬직전 연도 수입금액란의 금액을 기입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등의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합니다.
5. ⑳연도별 경감률란은 해당 연도는 100%, 그 다음 연도는 50%를 기입합니다.
6. ㉒해당 연도의 산출세액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또는 부동산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소득금액 × 분배비율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뒤 쪽)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2006.4.10가
				①상 호	
			신	(법 인 명)	
				③성 명	
			청	⑤주 소	
			인	⑥사업장소재지	
				1. 수입금액 증가율 기준	
				⑧직전 연도 수입금액	⑨해당 연도 수입금액
				2.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	
				⑬직전 연도 소득금액	⑭해당 연도 소득금액
				3.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증가율	
				⑱직전 연도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⑲해당 연도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4.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비율	
				⑳해당 연도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㉑해당 연도 수입금액

5.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외의 사업자(

㉒직전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교부금액

<참고 6> 관련 규정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장부를 비치하여 가장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별·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소득금액을 추계노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장을 포함합니다)의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또는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의 방법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릅니다.
3. ⑧·⑨·㉕·㉓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4. ⑭해당연도 소득금액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5. ⑮·⑲·㉔·㉒란의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은 신용카드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4항의 방식에 따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6. ㉞매입경비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㉟급료 등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7. ㉑정규증빙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8. ㉙·㉚란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은 계산서 금액을 기입합니다.

9. ⑫·⑰·㉓·㉘·㉙·㉚·㉜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10. 세액공제 신청대상자인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1)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㉙·㉚란은 적항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도등”이라 한다)까지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산출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
1. 직전 과세연도(신규과세연도) 업종별 수입회계기준에 의하여 같다)이 대통령령이
 2. 당해 과세연도등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이라 한다)을 직전 100분의 30을 초과한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은 과세표준이 증가한
 3. 당해 과세연도 소득

(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계산특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2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2. 세액공제의 특례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연도에 신고된 사업은 개시한 사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의 20으로 한다.

⑤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이하 이항에서 "합계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된 소득세 및 그 직전 과세연도등의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⑧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차감한다.

1. 당해 과세연도등에 대하여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2. 당해 과세연도에 대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공제신청방법과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세액공제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 제117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 ②법 제12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③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의한 영수증교부 대상사업자와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 ④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

- 가 운영하는 영화관업
- 4.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
액계좌
- ⑤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은 「부가가치세법」 제
득세법」 제81조제7항
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⑥법 제122조의2제1항제5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1. 장부를 비치·기장할
2. 「소득세법」 제160
경우에는 「소득세법
의 금액을 제외한 필
규정에 의한 지출증
청장이 정하는 비율
⑦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
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⑧~⑫ (생략)
- ⑬법 제122조의2제2항·제
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
및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